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0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김기웅 · 백종현
구자근 · 김종양 · 최보운
고동진 · 최수진 · 주호영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·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).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들 수 있다”를 “들어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적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<u>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들어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